

제14권: 2004. 10. 25.

##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 송 수

1. '쌀 협상 시한'과 관련된 견해 .....	1
2. '쌀 협상 시한'과 'DDA 농업협상'의 관계 .....	4
3. 2004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 .....	6
4. 상대국과 합의해 2004년 후에도 협상하는 경우 .....	8
5. 제3국이 협상 지연에 관해 제소할 가능성 .....	9
6. 요약 및 결론 .....	10
7. 참고문헌 .....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송수 연구위원 /02-3299-4320 songsoo@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정보플라자) /02-3299-4224 sklee@krei.re.kr

- 우리 연구원은 일부 연구결과를 'KREI 농정연구속보'로 간결히 정리하여 정책 담당자나 농업인 등에게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쌀 협상 시한’과 관련된 견해

쌀 협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 WTO 농업협정 부속서 5(Annex 5)의 8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21일, WTO 사무국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sup>1</sup> 그 후 3개월간 협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9개국(미국, 중국, 호주, 타이,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이 신청했고, 5월 6일에 미국과 첫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10월 초 현재까지 모든 상대국과 2번 이상 협상했고, 특히 미국, 중국과 각각 5차례, 타이와 4차례 협상했다. 협상의 진행 속도가 계획보다 더딘데, 이는 협상 상대국 수가 많고, 각 나라의 요구 내용과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농업협정이 명시한 시한인 2004년까지 협상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sup>3</sup> 원인이 무엇이건, 쌀 협상이 2004년 안에 끝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 점에 대해, 하나는 2004년 안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가 없더라도 반드시 관세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다. 이 중 어느 의견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협상 전략이 달라진다. 관세화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양보의 폭을 어느 정도 넓히더라도 2004년 안에 협상을 타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면 관세화 의무가 없다면, 2004년 중에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관세화

<sup>1</sup> WTO 농업협정 부속서 5(Annex 5)의 8항, 양허표 수정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GATT 28조 및 이 조항에 의한 협상 절차를 규정한 1980년 결정문, 그리고 WTO 사무국과 사전 접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와 함께 이해 당사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보를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

<sup>2</sup> 관세화 유예의 연장에 대한 조건, 곧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의 증대, MMA의 수입방식 및 시장 방출, 관세화 유예 연장의 기간, 기타 상대국의 관심 사항 등이 의제로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p>3</sup> 쌀 협상의 근거가 되는 농업협정의 조항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유예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구태여 많은 양보를 하면서까지 협상을 타결할 이유가 없다.

위 두 견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쌀 협상이 DDA 농업협상의 완료 시점까지 연장되는 것이므로 2004년이 지나서도 관세화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는 도하(Doha) 무역 라운드하에서 농업협정이 일괄 타결 방식에 포함되며, 쌀 협상도 농업협정에 따라 진행되느니만큼 농업협상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sup>4</sup>

- 2) 2004년 안에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화해야 하는가?

이는, 관세화 유예는 관세화(tariffication) 원칙의 예외(except)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 없이 협상이 결렬되면 예외 조치는 끝나고 관세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 3) 협상 상대국과 2004년 이후까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협상 시한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인가?

이는, 협상이 거의 타결에 이르렀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 상대국과 합의하면 2004년 이후에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관세화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가의 문제이다.

- 4) 협상 상대국과 합의해 2004년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농업협정이 명시한 협상 시한을 위반했다고 제3국이 제소할 빌미가 있는가?

---

<sup>4</sup> 이 경우 쌀에 관한 의무사항은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 최종년도인 2004년의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는 제3국 또는 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WTO 회원국이, 200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이 관세화 유예 협상을 지속하면서 관세화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과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쌀 협상의 절차와 결과를 짚막히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의문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1>. 그러므로 부속서 5의 해석뿐 아니라 다른 WTO 규정, WTO 협상의 특성이나 전체에 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위의 의문들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협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쌀 협상이 2004년 말까지로 정해진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나 결과를 상정해보고, 이와 관련한 잠재적인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표 1.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쌀 협상 관련 주요 내용

- 7항: (a) 이행 첫해부터 5년째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1%에서 2%까지 수입량(MMA)을 균등하게 늘리고, 6년째부터 이행연도 마지막 해인 10년째까지 기준연도 소비량의 2%에서 4%까지 균등하게 확대한다.  
(b) 농업협정하에 다른 품목에 대해 적절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한다.
- 8항: 특별우대 조치의 지속문제에 관한 어떠한 협상도 이행 10년째에 시작해서 끝내야 한다(shall be initiated and completed).
- 9항: 협상의 결과로 특별우대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협상에서 결정된 대로 (상대국에)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를 제공한다.
- 10항: 특별우대 조치를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속서 5의 첨부문서의 지침에 따라 산출한 관세 상당치를 바탕으로 관세를 설정해 적용한다.

주: 위의 내용은 부속서 5의 공식 번역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위해 주된 사항만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WTO의 공식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한글 번역문에만 기초한 해석에는 세심히 주의해야 한다.

자료: WTO (<http://www.wto.org>)

## 2. ‘쌀 협상 시한’과 ‘DDA 농업협상’의 관계

2001년에 출범한 도하 무역 라운드(DDA)가 2005년 1월 1일로 위임한 협상 타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2005년 12월에 열리는 제6차 홍콩 각료회의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게 됐다. 이 점을 들어, ‘쌀 협상 시한’도 ‘DDA 농업협상’이 끝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기호 2004a; 2004b). 이러한 주장은 농업협정 20조에 의해 2000년부터 시작된 농업협상이 2001년부터는 도하 라운드에 통합되면서 일괄 타결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 주장은 또한 DDA 농업협상의 지연으로 쌀 관세화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은 (1) 개도국 지위 여부나 관세 감축 폭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조약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상황 변화’에 해당하고, (2) ‘당사국의 의무 이행 수준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약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데에 근거한다.<sup>5</sup> 그래서 농업협정의 일부분인 부속서 5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된 ‘쌀 협상’도 ‘농업협상’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쌀 협상’과 ‘농업협상’은 같은 농업협정에 근거할지라도 독립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농업협정 20조는 농업협상의 시작 시점(2000년)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속서 5는 ‘쌀 협상’의 시작과 종료 시점(2004년)을 모두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협상’의 경우,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가 협

<sup>5</sup>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62조 1항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has occurred with regard to those existing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treaty, and which was not foreseen by the parties, may not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or withdrawing from the treaty unless ... the effect of the change is radically to transform the extent of obligations still to be performed under the treaty.* <[http://www.fact-index.com/vi/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html](http://www.fact-index.com/vi/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html)>.

상 진척 수준을 보아 가면서 그 종료 시점을 정하지만, 협상 종료 시점이 이미 명시된 쌀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시한에 관한 새로운 위임사항이 필요하지 않다.<sup>6</sup>

- ② UR의 결과물인 ‘농업협정’은 조약법의 지위를 가지므로 회원국(체약국)은 농업협정이 명시한 규범에 따라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며, 농업협정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농업협정의 기본 골격은 조약법에 미치지 못하는 지침이므로, 일반 이사회의 결정문(para. 2)은 분쟁 해결 절차나 기존의 WTO 협정들을 해석하는 데에 이번에 합의된 기본 골격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sup>7</sup> 도하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킨 2001년 각료 선언문 자체도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을 ‘인정하고(recognize)’, 그 ‘장기 목적을 상기시키며(recall)’, ‘이 때까지 이루어진 작업을 바탕으로(*building on the work carried out to date*)’ 포괄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도하 각료 선언문 13항).
- ③ ‘농업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3년에 ‘농업협정 13조’ 평화조항의 적용이 종료된 사례는 농업협상이 연장되더라도 유효 기간이 정해진 특별조치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sup>8</sup> 농업협상 과정에서 평화조항의 연장을 일부 회원국이 제안하였지만, 세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2003년을 넘겼고, 이에 따라 평화조항은 끝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teinberg and Josling 2003; Siuves 2004).

<sup>6</sup> WTO 일반이사회는 2004년 8월 1일에 세부원칙(modalities) 협상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하고, 도하 각료 선언문의 para. 45가 제시한 협상 종료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을 제6차 홍콩 각료회의가 열리는 2005년 12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 기본골격 안에는 쌀 협상이나 그 시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sup>7</sup>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General Council agrees that this Decision and its Annexes shall not be used in any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under the DSU and shall not be used for interpreting the existing WTO Agreements.*

<sup>8</sup> 평화조항(Peace Clause)은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감축이 농업협정의 요건에 맞게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돼 있는 경우 GATT의 보조금 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④ ‘농업협정 부속서 5’는 농업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 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쌀 협상을 2004년에 끝내려는 의도였는지 모른다. 그리하였더라도, 그런 의도는 농업협정 문안 자체의 해석보다 우선하지 않고 다만 보조적인 의미를 가진다(정영진 2004).<sup>9</sup> 설혹 농업협상과 쌀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의도하였더라도 농업협정에 따라 2004년 중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2004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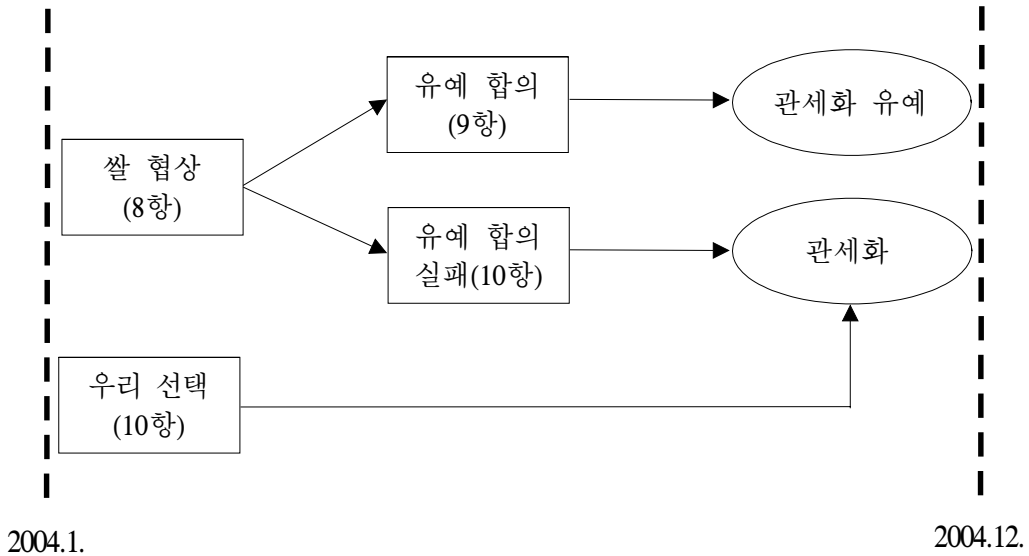
2004년 말까지 쌀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200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유예가 중단되고, 우리나라는 농업협정의 일반 원칙(4조 2항)에 따라 쌀 수입 관세화로 곧바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인가?

먼저 관세화 유예의 특별조치를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을 규정한 농업협정 조항을 면밀하게 해석해야 한다<그림 1>. 그러려면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냐에 따라 협상 또는 결정 절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는 반드시 협상을 거쳐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부속서 5의 9항은 이를 ‘협상 결과로 합의된 경우(*If it is agreed as a result of the negotiation*)’라고 명시했다.

<sup>9</sup> ‘조약법에 관한 Vienna 협약’의 31조는 조약의 용어에 주어진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신실(*in good faith*)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고, 32조는 조약 체결의 준비작업이나 결론의 여건 등은 ‘해석의 보조적인 의미(*supplementary means of interpretation*)’으로 받아들일 것을 밝히고 있다<[http://www.fact-index.com/v/vi/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html](http://www.fact-index.com/v/vi/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html)>.



그림 1.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의 결과: 농업협정 부속서 5



자료: WTO.

그러나 관세화를 규정하는 부속서 5의 10항은 ‘특별조치를 지속하지 않기로 한 결과(*In the event that special treatment ... is not to be continued ...*)’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다. 10항이 명시한 ‘결과(event)’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관세화를 선택한 결과’와 ‘관세화 유예를 위해 협상했지만 이에 합의하지 못한 협상 결렬의 결과’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세화’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 조치를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도 해당하고,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sup>10</sup>

이와 관련해 협상 상대국이 일부러 협상에 불성실하게 응함으로써 협상 시한을 넘기려 하거나 또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의 추가 양보를 고집함으로써 관세화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협상 상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

<sup>10</sup> 일본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관세화 유예의 특별조치(special treatment)를 받았으나, 1999년 4월부터 스스로 관세화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만도 2002년에 1년 동안 관세화 유예의 특별조치를 약속 받았지만 같은 해 9월에 관세화를 선언했다 (김태곤, 정정길 2004).

대화하려고 할 것이므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가운데 관세화를 사전에 선택하고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

거꾸로 상대국이 한국의 양보 조건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한국의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관세화 여부’와 ‘관세화 유예에 따른 MMA 증량 폭에 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균형 있는 협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나라와 협상 상대국이 서로 관세화 유예 조건에 관해 만족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협상이 결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는 부속서 5의 10항에 따라 관세화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화를 시행하려면 국내외 절차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관세 상당치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WTO에 통보해 다른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00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가 곧바로 단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자동 관세화’보다 ‘관세화 의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 4. 상대국과 합의해 2004년 후에도 협상하는 경우

협상이 합의에 거의 이르렀지만, 시간이 모자라 2004년 안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이면 우리나라는 협상 상대국들의 동의를 얻어 2004년이 지나서도 협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협상 시한이 2004년으로 못 박힌 상태이므로 협상 연장은 짧은 기간으로 한정될 것이다.

GATT 28조에 따라 진행되는 회원국의 양허표(country schedule) 수정에 관한 협상은 60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항). 쌀 협상도 양허표 수정에 관한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해 상대국과 양자 협상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농업협정이 설정한 1년이라는 쌀 협상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연장하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상대국과 합의해 협상을 지속하더라도 2004년 안에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세화 시행이 유보될 것이다.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관세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 5. 제3국이 협상 지연에 관해 제소할 가능성

쌀 협상이 2004년이 지나서도 계속되면 협상 상대국 이외의 제3국이, 한국이 농업협정 부속서 5의 10항을 위반했다고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가?<sup>11</sup> 법 규정 측면에서 제3국은 우리나라가 관세화의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소할 수 있을 테지만, 제소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제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 ①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보통 2~3년이 걸리므로 패널이나 상소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쌀 협상의 결과가 제시될 것이다. 곧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로 결정된 협상 결과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관련 제소와 그에 대한 판결은 의미가 없어진다.

<sup>11</sup> 부속서 5의 10항 이외에도 예외 없는 관세화를 명시한 농업협정 4조 2항과 수량제한을 금지한 GATT 1994 11조 1항 등이 관련될 수 있다(정영진 2004).

<sup>12</sup> 다른 회원국이 당사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농업협정이 발효된 이래 첫 농산물과 관련된 분쟁인 ‘EC-바나나 사건’에서 미국은 바나나 생산이 미미하고 수출 가능성도 적지만 바나나 무역과 투자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패널에 의해 당사국으로 인정받았다(법무부 1999, 225).

- ② 우리나라가 관세화의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국 또는 제소할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어느 회원국이 우리나라의 관세화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 제소할 것이면, 이미 다른 9개국처럼 쌀 협상 상대국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이를테면, 협상 상대국과 합의해 협상을 연장하는 것은 쌀 협상의 양자적인 특성상 잠재적인 분쟁 당사국의 이해를 얻은 것과 다르없다고 할 수 있다.
- ③ 제소국은 한국이 관세화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된 피해 증거를 WTO 패널에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관세화했을 경우 제소국이 국내 시장접근의 확대나 국제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관세 상당치(400% 이상)보다 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분쟁 당사국 사이의 협의이고, 다른 하나는 패널을 통한 제소이다. 분쟁의 반 이상이 당사국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고 있을 만큼 당사국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박노형 1999). 쌀 협상은 분쟁 해결 절차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해 당사국 또는 상대국과 협의를 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그러므로 상대국과 합의해 협상을 연장하면, 이는 사전에 분쟁 가능성을 잠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쌀 협상은 농업협상에 종속된 사건이 아니다. 농업협상이 지연되더라도 쌀 협상은 지연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 조약법인 WTO 농업협정이 2004년까지 쌀 협상을 마치도록 위임했으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지켜야 한다. 최근에 합의된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이나 기본골격은 농업협상의 위임사

항을 재해석하지도, 할 수도 없다. UR 당시에 두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의도하였더라도, 이 의도는 농업협정 문안 자체의 해석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2004년 중에 관세화 유예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관세화 시행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관세화를 이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협상 상대 9개국이 동의하면 쌀 협상이 2004년 후로 연장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협상 진행 상태이므로 협상 결렬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가 곧바로 쌀 관세화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도 농업협정이 정한 시한 안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협상 상대국 이외의 다른 WTO 회원국이 우리나라가 관세화 의무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과 요건을 감안하면 제3국이 우리나라를 제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참고 문헌

- 김태곤, 정정길. 2004.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KREI 농정연구속보 2004-3(제8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노형. 1999. WTO 분쟁해결절차. 내부자료.
- 법무부. 1999. 「농업통상법」. 삼성출판인쇄(주).
- 송기호. 2004a. 「WTO 시대의 농업통상법」. 개마고원.
- 송기호. 2004b. 「쌀 협상 미타결시 2005년 관세화 의무 발생론의 아홉 가지 모순」. 쌀 재협상에 관한 토론회, 2004년 9월 21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정영진. 2004. “쌀 관세 유예 협상에서의 법적 쟁점.” 쌀 재협상에 관한 토론회, 2004년 9월 21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 Siuves, H.N. 2004. The “Expiry of the Peace Clause on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The Outlook Post-Cancun.”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1(1):25-42.
- Steinberg, R.H. and T.E. Josling. 2003. “When the Peace Ends: The Vulnerability of EC and US Agricultural Subsidies to WTO Legal Challeng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2):369-417.

**KREI 농정연구속보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4. 10.

발 행 2004. 10.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5

---

-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